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83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고민정 · 박상혁 · 김문수
허영 · 문진석 · 김준혁
백승아 · 조인철 · 김우영
강경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분류·보존·활용 등 기록물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대학 기록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절반 이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대학은 기록관 설치 및 전문 기록관리요원 배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 기록물

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련자의 권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의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에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기록물 관리) ① 학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 기록의 진본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가 생산·관리하는 중요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기록물의 범위, 선정 기준, 이관,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u>제11조의6(기록물 관리) ① 학교</u> <u>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u> <u>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u> <u>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u> <u>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및</u> <u>활용을 위하여 기록물을 관리</u> <u>하여야 한다.</u> <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u> <u>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u> <u>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u> <u>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 기</u> <u>록의 진본성 및 신뢰성 확보를</u> <u>위하여 학교가 생산·관리하는</u> <u>중요기록물을 통합하여 관리할</u> <u>수 있다. 이 경우 중요기록물의</u> <u>범위, 선정 기준, 이관, 보존·</u> <u>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u>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u> <u>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에 필요</u> <u>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u>

수 있다.